

6-나. 조경수 생산

1. 사업대상자

-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 - 조경수 생산포지 0.5ha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·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(시설)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(조경수 유통센터 포함)
 - 조경수 생산포지 0.5ha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·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(시설)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
 - 기타 조경수 생산자
- 지원제외 대상
 - ‘제1편 일반사항 - II.사업시행 주요내용 - 2. 지원제외 대상’ 참고
 - 당해년도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(단,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)
 - * 예) ① '26년 협회 회원이 비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, '26년 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
 - ② '26년 협회 회원이 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, '26년 비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
 - ③ '25년 협회 회원이 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, '26년 비협회분 예산 배정 가능

3. 지원대상 및 형태

(단위 : %, 년)

사업명	금리	용자기간			용자한도 및 비율
		계	거치	상환	
조경수 생산	고정금리(2.0) 또는 변동금리	10	5	5	사업비의 80%이내
조경수 유통센터운영		10	5	5	사업비의 80%이내

- * 고정금리 : 대출금 만기시까지 2.0%의 고정금리 적용
- * 변동금리 :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
(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)
- * 대출시기 :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용자
- * 조경수 생산 소요자금 : 2,605백만원

4. 사용용도 및 범위

○ 조경수 생산·유통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
- (조경수 생산) 조경수 묘목 구입, 생산포지 증설(기본포지의 운영), 포지내 보식 등 생산, 시설 지원 및 인건비, 비료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(포지매입 시 기식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)
 - * 임야, 전답 매입 자금은 포함하지 않음
 - * 묘목 구입 시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임업관측정보(조경수관측월보)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에 한하여 지원([참고 16])
 - * 묘목 구입 시 규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임업관측정보(조경수관측월보)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묘목으로 인정([참고 16])
- (조경수유통센터 운영자금)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한하여 지원

5.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

○ 협회분 비율

- 사업별 소요자금의 최대 60%는 관련 협회 정회원, 나머지는(100% - 정회원 배정 비율) 비회원에게 배정. 단,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 - * 관련 협회 : 한국조경수협회
 - * 협회 회원 여부는 해당 협회장의 추천으로 같음
- 추가 조정재원의 경우 협회 배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
- 협회 배정비율은 아래 표에 따른다.

협회분 전년도 집행률	70% 이상	60~70%	60% 미만
당해연도 협회분 배정비율	60%	55%	50%

* 전년도 집행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

○ 사업자 선정 절차

- 1) 산림청 :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」 통보 ⇨ 사업별 관련협회
- 2) 협 회 :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(당해연도 2월말까지) ⇨ 산림청, 중앙회
 -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역산림조합으로 예산을 배정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, 미대출자는 취소, 후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

- * 7월 1일 이후 배정된 예산은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 회수
- * 후순위자 : 7월부터 신규 및 변경 선정된 자
- * 지역 산림조합 : 서류확인,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
 -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
- 우선순위자 선정 지회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만 신청하여야 함(단, 연접된 시·도(광역지자체)는 가능
- 협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, 융자심의회를 통해 ‘[참고 8-2]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’에 따라 심사하고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자 명단 작성(명단 제출 시 심사자료를 함께 제출)
- 협회에서는 협회분 사업자 선정의 배분기준을 협회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배분 기준 및 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(개인정보 제외)
- 우선순위자 선정 시 선정자의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자가 대출신청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

- 상반기까지 미배정된 예산은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

3) 중앙회 :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대출실행여부 확인 및 미대출자 명단 제출

☞ 산림청, 협회

4) 협 회 :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후신청자 우선순위 선정·제출

☞ 산림청, 중앙회

* 중앙회로부터 미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제출

[참고 16] 조경수 지원 수종(162종)

구분	
침엽수	<p>곰솔(조형), 곰솔(해송), 금송, 낙우송, 대나무, 메타세퀘이아, 문그로우, 백송, 블루엔젤, 서양측백, 섬잣나무, 소나무, 소나무(둥근형), 소나무(장송), 소나무(조형), 에메랄드 그린, 에메랄드 골드, 은행나무, 잣나무(스트로브잣나무), 전나무(젓나무), 주목(눈주목), 주목(둥근형), 주목(선주목), 측백나무, 카이즈카향나무(조형), 편백, 황금측백</p>
활엽수	<p>가시나무, 갈참나무, 감나무, 겹벚나무, 계수나무, 고로쇠나무, 공작단풍(수양단풍)청, 공작단풍(수양단풍)홍, 굴거리나무, 굴참나무, 금목서, 금목서(조형), 꽃복숭아, 꽃사과, 남천, 노각나무, 느릅나무, 느티나무, 당단풍, 대왕 참나무, 대추나무, 돌배(산돌배), 동백나무(홀,겹), 때죽나무, 떡갈나무, 마가목, 매실나무(매화나무), 먼나무, 모감주나무, 모과나무, 목련(백목련, 자목련), 무궁화(가로수 및 정원용), 물푸레나무, 미국산딸나무(홍), 미국풍나무, 배롱나무, 배롱나무(핑크벨벳, 다간형), 백합나무(목백합, 튜립나무), 복자기, 산딸나무, 산벚나무, 산사나무, 산수유, 살구나무, 삼색 버드나무(조형), 상수리나무, 서부해당화, 수양(능수)버들, 신갈나무, 아왜나무, 애기동백나무, 왕벚나무, 은목서, 은목서(조형), 이팝나무, 자귀나무, 자엽자두, 자작나무, 졸참나무, 중국단풍, 참빗살나무, 청단풍, 층층나무, 칠엽수, 칠자화, 칠자화(다간형), 팔배나무, 팽나무, 호랑가시나무, 홍가시나무, 홍가시나무(조형), 홍단풍, 황금회화나무, 황칠나무, 회화나무, 후피향나무</p>
관목	<p>가막살나무, 가침박달나무, 개나리, 고광나무(3가지), 공조팝, 광나무, 꼬리조팝나무, 꽃댕강, 팡팡나무, 팡팡나무(둥근형), 나무수국(라임라이트), 나무수국(일반), 낙상홍, 노랑말채나무, 눈향나무, 능소화, 다정큼나무, 댕강나무, 덜꿩나무, 돈나무, 등나무, 만병초, 말밭도리, 목향장미(3가지), 박태기나무, 백당나무, 병꽃나무, 병아리꽃, 불두화, 사계장미(5치포트), 사계줄장미, 사철나무, 산당화(명자나무), 산수국, 산철쭉(철쭉류), 삼색조팝나무, 생강나무, 수수꽃다리(라일락), 쉬땅나무(개쉬땅나무), 야광나무, 영산홍, 영춘화(3가지), 자산홍, 조팝나무, 좀작살나무, 쥐똥나무, 진달래(용기묘), 치자나무, 팔꽃나무, 피라칸사스, 해당화(3가지), 화살나무, 황금사철나무, 황매화, 회양목, 회양목(둥근형), 흰말채나무, 흰철쭉(백철쭉), 히어리</p>

* 출처 : 2025년 임업관측월보(조경수, 한국농촌경제연구원)